



보도 일시	<전매체> 10. 4.(화) 08:30		-	
담당 부서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과 장	김주식 (044-204-7520)
	기업금융과	담당자	서기관	김승택 (044-204-7521)
<총괄>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변제호 (02-2100-2830)
	금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송현지 (02-2100-2832)
			사무관	송병민 (02-2100-2835)

10.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출범식 개최
 - 19개 금융협회·금융기관이 참석하여 ‘새출발기금 업무협약’ 체결
- 4일부터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및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1 행사 개요

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캠프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이영 장관, 백혜련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새출발기금 출범 기념 행사를 가졌다.

출범 행사는 개식선언 및 기금출범 기념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들의 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개요>

□ 일시 / 장소 : '22.10.4일(화) 08:30~09:00 / 캠프 양재타워

□ 주요참석자

- (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
- (정부) 이영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 (금융권 등) 금융협회·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새출발기금 이사진

협약대상 금융협회·기관	①기술보증기금, ②농협중앙회 ③산림조합중앙회, ④새마을금고중앙회, ⑤새출발기금, ⑥생명보험협회, ⑦서민금융진흥원, ⑧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⑨손해보험협회, ⑩수협중앙회, ⑪신용보증기금, ⑫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⑬신용회복위원회, ⑭신협중앙회, ⑮여신금융협회, ⑯은행연합회, ⑰저축은행중앙회, ⑱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⑲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①소상공인연합회, ②한국외식업중앙회, ③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④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새출발기금 이사진	(임명직) 이항용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장),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김종운 한남대 글로벌비즈니스스쿨 교수 (당연직)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감 사) 박순철 변호사

2 출범식 주요 행사

먼저, 이종국 새출발기금 사무국장(한국자산관리공사 이사)이 새출발기금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이 사무국장은 새출발기금의 지원방식*·규모(최대 30조원)·운영기간**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금의 향후 운영방안 및 목표를 소개하며 새출발기금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 부실(우려)채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상환일정 및 금리조정, 채무감면 등 실시

** 향후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 및 채권 매입(필요시 최대 3년)

이어서 진행된 기금 협약식에는 19개 금융협회장·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협약 금융협회· 기관	①기술보증기금, ②농협중앙회 ③산림조합중앙회, ④새마을금고중앙회, ⑤새출발기금, ⑥생명보험협회, ⑦서민금융진흥원, ⑧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⑨손해보험협회, ⑩수협중앙회, ⑪신용보증기금, ⑫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⑬신용회복위원회, ⑭신협중앙회, ⑮여신금융협회, ⑯은행연합회, ⑰저축은행중앙회, ⑱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⑲한국자산관리공사
----------------------------	--

새출발기금 업무협약은 지난 수 개월간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각 업권·기관 간의 끊임없는 협의·소통을 통해 마련됐으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지원내용, 채무조정 방식 및 절차, 채권 매입가격 등 기금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각 금융협회는 현재 협약가입 대상 3,730여개의 금융회사의 동의서 취합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편, 협약식 이후 진행된 현판 제막식에서는,

이영 장관, 백혜련 정무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항용 새출발기금 의장, 박순철 새출발기금 감사,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해 새출발기금의 성공을 기원했다.

오늘 공개된 새출발기금 현판은 새출발기금의 브랜드 이미지(BI)를 담고 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위기를 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취지를 담았다. (☞ 참고 2)

- * 새출발기금의 표어(슬로건)인 “새희망. 새도약. 새출발기금” 핵심어(키워드)에 맞춰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모습을 형상화

3 인사말 및 축사

출범식 행사에서는 새출발기금 대표이사의 인사말 및 주요 귀빈들의 축사도 진행했다.

권남주 새출발기금 대표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조치에 묵묵히 협조해 주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빚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출범에 힘써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원했다.

또한 새출발기금의 재원 마련을 지원했듯이,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는 민생국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이영 장관은 최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 출범을 환영하며,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누적된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져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새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에 이어, 새출발기금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금융권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 피해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출범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는 채무조정뿐 아니라 비금융지원·신규자금지원 등 충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성실상환자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 소상공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갖고 새출발기금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온 국민이 희망과 훈훈함을 느낄 수 있길 기원했다.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4일 09:00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전화상담실(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실(콜센터)(1600-5500)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서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누리집(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분들은 누리집(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새출발기금 신청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참고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출발기금 오픈시점 및 운영시간>

	누리집 (온라인 플랫폼)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전화상담실(콜센터)
오픈시점	9.27(화) 09:30	10.4(화) 09:00	9.27(화) 09:0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평일 09:00~18:00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	새출발기금(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평일 09:00~18:00

담당 부서 <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김주식 (044-204-7520)
		담당자	서기관	김승택 (044-204-7521)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변제호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송현지 (02-2100-2832)
<공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기금운영처	책임자	처 장	태동국 (051-794-3770)
		담당자	팀 장	홍원기 (051-794-2027)



참고 1**새출발기금 출범식 행사 개요**

□ 일 시 : '22.10.4.(화) 08:30 ~ 09:00

□ 장 소 : 캠프 양재타워(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시간		행사내용	장소
08:30~08:32	(2')	▶ 개식 선언 및 국민의례	캠코양재타워 14층
08:30~08:32	(3')	▶ 새출발기금 출범기념 영상	
08:35~08:36	(1')	▶ 새출발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08:36~08:39	(3')	▶ 정무위원장 축사	
08:39~08:42	(3')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축사	
08:42~08:45	(3')	▶ 금융위원장 축사	
08:45~08:48	(3')	▶ 새출발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 계획	
08:48~08:52	(4')	▶ 새출발기금 협약식	
08:52~08:55	(3')	▶ 기념촬영	캠코양재타워 1층
08:56~09:00	(4')	▶ 새출발기금 현판 제막식(1층)	

참고 2**새출발기금 현판**

< 새출발기금 현판(브랜드 이미지) >



참고 3

새출발기금 이사회 구성

직 위	사 진	성 명	직 책
당연직 이사		권남주 (기금 대표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임명직 이사		이항용 (기금 의장)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종운	한남대 글로벌비즈니스스쿨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감 사		박순철	변호사 (법무법인 흰뒨)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대응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 지원(국정과제 I -①)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새출발기금이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식을 거쳐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게는 상환능력에 맞추어 **원금감면**

주요 지원방안

대상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서 별도지원없이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우려)차주
매입규모	최대 30조원
지원체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특수목적기구)을 통한 채권 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 채무조정
지원내용	거치기간(1~3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0~80%) *취약계층은 ~90%
지원기간	22년 10월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 가능

- ➡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원금감면 대상 및 원금감면율의 합리적 설정, 신용패널티 부과 등 실시
- ➡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조정全过程를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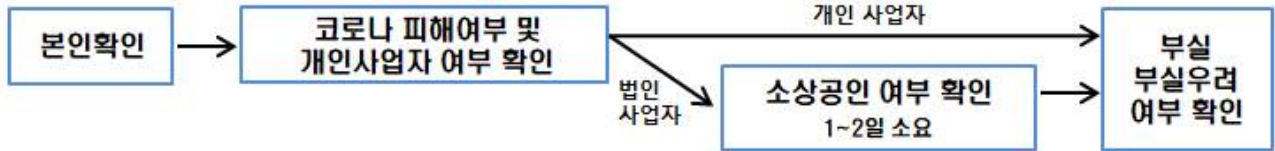
기존제도와 차이

- ✓ (기존) 개인/기업 대상 채무조정
➡ (개선) 최초의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 ✓ (기존) 채무조정이 용이한 신용채권 위주
➡ (개선) 담보부 채권, 보증부 채권, 신용채권 모두 **빈틈없이 지원**
- ✓ (기존) 코로나 피해 등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평시 채무조정
➡ (개선) **코로나 피해**로 누적된 잠재부실을 고려한 특별 채무조정

참고 5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은 ①본인확인, ②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③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신한은행, 삼성패스 등
-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으로 접속하시면 본인확인 이후 채무조정 대상 차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 ①코로나피해 ②개인사업자 ③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 일부 요건만 먼저 확인한 후 화면이 종료되나, 5-10분(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채무내역·연체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후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보내드린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플랫폼의 ‘진행상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②소상공인·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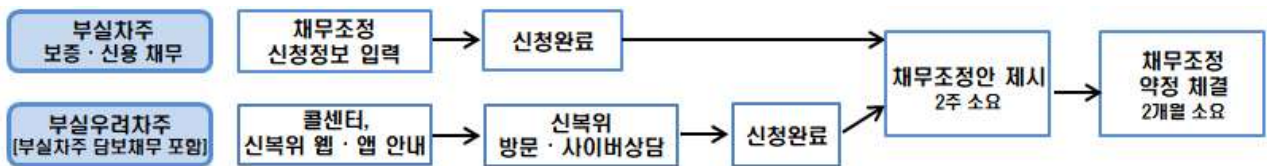
* 일부 요건만 먼저 확인한 후 화면이 종료되나, 1-2일(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의 진위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확인시 소요되는 시간) 후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보내드린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플랫폼의 '진행상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조정 대상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이 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절차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3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의 신청



- 채무조정 대상 차주로 확인이 되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미리 자금계획에 따라 생각해두신 희망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게 되며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이외 자산은 새출발기금에서 별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드리게 되며,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 채무조정안 송부시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며, 해당 메시지에 적힌 링크 또는 온라인 플랫폼의 '새출발기금 신청 결과'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약정과 관련된 사항은 카카오톡(또는 SMS)이나 전화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최대 2주 이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상담날짜를 예약*(최대 2주 이내)한 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 * 방문상담 날짜예약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상담은 최대 2주 내에 이루어지게 되며,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 채무조정 진행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채무조정 약정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와 우편 송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방문상담(오프라인신청)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는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도 이전부터 운영 중 →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안의 변경·무효 및 취약계층의 원금조정을

- 채무조정안이 송부된 이후, 채무조정 지원 대상 대출이 아닌 경우 당해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조정안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